

영등포구의회
제16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2.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6호로 2012년 2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급식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마련하는 등 현행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체계를 갖추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급식경비 지원대상 기관의 지원신청서 제출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나. 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및 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능 신설(안 제6조의2)

라. 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신설(안 제7조제2호)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른 자구 수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시작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서울시가 동참하고 2012. 1. 5일 서울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그간의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우리구 학교급식 지원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체계를 갖추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함.

- 안 제5조의2에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장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신설함.
- 안 제6조에 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위원회 정족수를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는 규정 신설함.
- 안 제6조의2에 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신설하여
 -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 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안 제7조제2호에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여
 -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 조사
 -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 선정

-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 및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제3항에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학교급식의 지원주체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원만한 협의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 먼저 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등 학교급식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며
- 또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보다 안전한 식재료가 유통되고

공급·관리되는 등 학교급식 지원체계가 보장 될 것으로 판단됨.

-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 체계가 보장되면 원활한 급식지원 체계를 갖추므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